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00호 2022. 10. 6.(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209호 사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340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사천시 공고 제2022-1342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1
- 사천시 공고 제2022-1348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고시 제2022-209호

사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2022.4.28.)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사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이해관계인은 사천시 환경보호과(☎ 055-831-2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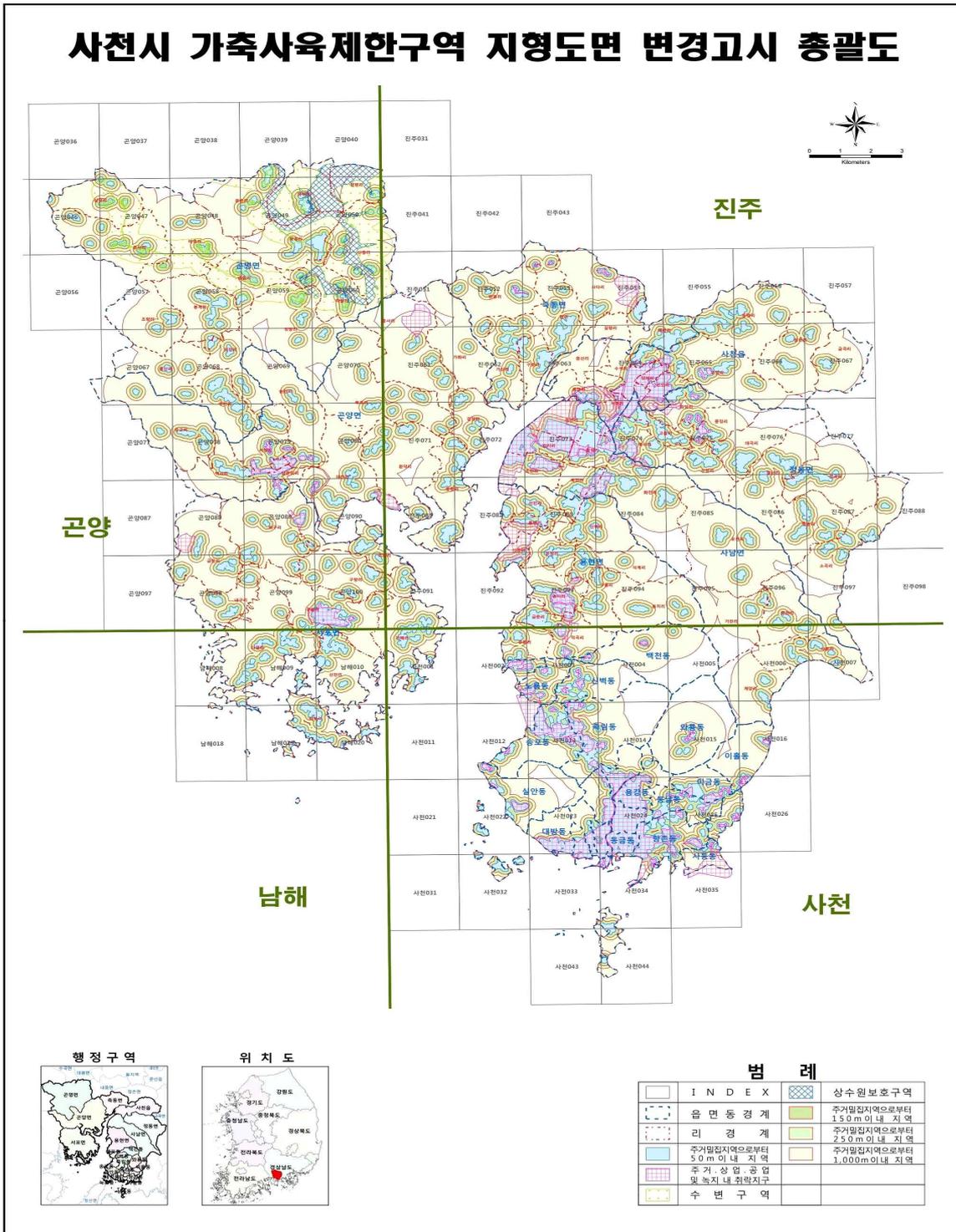
4.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행정명	행정면적 (㎡)	전부제한구역 (㎡)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150m 이내	주거밀집지역 250m 이내	주거밀집지역 1,000m 이내	면적(㎡)	비율
동동	866,204	247,077	86,585	172,778	619,127	866,204	100.0%
서동	563,887	375,882	51,837	96,717	188,005	563,887	100.0%
신구동	626,644	568,947	57,423	57,697	57,697	626,644	100.0%
동금동	799,497	799,497				799,497	100.0%
서금동	143,206	131,605	1,584	1,584	11,601	143,206	100.0%
동림동	1,424,215	440,905	254,121	469,044	983,310	1,424,215	100.0%
좌룡동	1,337,793	514,322	122,677	248,985	823,471	1,337,793	100.0%
별리동	1,033,100	994,987	38,016	38,113	38,113	1,033,100	100.0%
용강동	2,019,873	942,200	310,693	595,286	1,077,672	2,019,872	100.0%
와룡동	6,696,361	216,397	372,666	780,908	4,645,121	4,861,518	72.6%
봉남동	1,992,232	648,114	647,054	1,056,509	1,344,117	1,992,231	100.0%
이금동	1,750,865	551,942	292,750	532,712	1,198,922	1,750,864	100.0%
이홀동	3,148,453	268,346	262,346	526,970	2,772,753	3,041,099	96.6%
궁지동	1,104,803	233,043	358,076	662,231	871,760	1,104,803	100.0%
사등동	1,089,206	488,752	116,534	240,354	600,454	1,089,206	100.0%
향촌동	3,584,963	2,044,633	975,169	1,331,616	1,540,330	3,584,963	100.0%
대방동	1,810,620	538,898	74,350	208,537	1,258,770	1,797,668	99.3%
실안동	4,634,486	443,900	467,862	832,080	3,348,118	3,792,018	81.8%
마도동	199,514	101,495	85,377	94,531	98,019	199,514	100.0%
늑도동	501,278	174,232	169,153	268,336	327,045	501,277	100.0%
신수동	1,126,199	152,517	166,137	357,478	961,089	1,113,606	98.9%
백천동	6,513,203	149,263	269,535	656,520	4,062,281	4,211,544	64.7%
신벽동	3,030,654	496,283	566,585	890,399	2,100,832	2,597,115	85.7%
노룡동	1,820,160	457,261	422,142	992,014	1,362,899	1,820,160	100.0%
대포동	625,993	299,352	169,239	256,925	326,641	625,993	100.0%
송포동	4,206,979	1,409,322	774,129	1,227,964	2,797,657	4,206,979	100.0%
죽림동	7,205,129	1,180,410	734,933	1,397,331	3,734,219	4,914,629	68.2%
사천읍	29,805,250	5,744,091	3,402,456	6,720,121	22,665,437	28,409,528	95.3%
정동면	36,752,552	4,929,947	5,293,355	10,091,227	28,092,317	33,022,264	89.9%
사남면	42,397,074	8,069,462	4,298,086	8,489,375	29,380,823	37,450,285	88.3%
용현면	27,923,996	5,800,579	4,708,767	9,301,283	21,716,994	27,517,573	98.5%
축동면	23,296,140	3,514,615	3,844,060	7,892,606	19,772,310	23,286,925	100.0%
곤양면	61,023,649	5,306,788	7,291,482	15,579,405	52,866,606	58,173,394	95.3%
곤명면	69,804,904	29,866,109	4,420,651	9,572,338	37,305,769	67,171,878	96.2%
서포면	48,217,695	6,377,158	8,351,075	16,952,090	40,901,434	47,278,592	98.1%
합 계	399,076,777	84,478,331	49,456,905	98,592,064	289,851,713	374,330,044	93.8%

사천시 공보

제800호

5. 총괄도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공고 제2022-1340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외 1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등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의 4)
- 2) 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
- 3) 수도요금 업종의 가정용 중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마을회관, 기숙사를 추가(안 제38조 및 별표 3)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나.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 2)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 3)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상하수도사업소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5253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공단2로 193, 전화 : 831- 5541, FAX : 831- 6062)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 나. 수도요금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
- 다. 수도요금 업종의 가정용 중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명확화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마을회관, 기숙사를 추가(안 제38조 및 별표 3)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시의”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공업자”를 각각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한다.

제9조 중 “시공업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수도사용자가”를 “수도사용자 등이”로, “수도사용자의”를 “수도사용자 등의”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공사 준공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제20조제1항 단서 중 “사유에 의하여” 를 “사유로” 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수도사용자” 를 “수도사용자 등”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고” 를 “따르고” 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가산금)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제36조제1항 중 “의하며” 를 “따라” 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를 “가정용 사용량”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사용단계” 를 각각 “사용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을 “학교는” 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재판에 의하여” 를 “판결이”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제4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15조제1항 관련)” 을 ““(제16조제1항 관련)” 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6조제1호 관련)” 을 “(제15조제1호 관련)” 으로 하고,
“(㎡/m당)” 을 “(㎥/m당)”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업종구분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적용례) 제35조의 가산금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블록”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급수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통별(광역상수도 수수지역, 지방상수도 수수지역) 및 배수지별로 분할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p>	<p>제3조(급수구역)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 -----. ----- ----- -----.</p>
<p>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생략)</p> <p>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 한 개의 급수설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수도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p>	<p>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따라 -----</p>

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의 시행) ① -----
-----.

----- 대행업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급수공사 대행업자-----

-----.
-----.

⑤ 급수공사 대행업자-----

-----.

-----.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② (생략)
③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③ (생략)
④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제9조(준공검사) -----
급수공사 대행업자-----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도사용자
등이 -----
수도사용자 등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라 -----.

-----.

제14조의4(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
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대 4회까지 분
할납부할 수 있으나 공사 준공 전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

----- 사유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 -----
-----.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생략)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제29조(수도요금) (생략)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고,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수도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 3. (생략)

② (생략)

----- 수도사용자 등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수도요금) (현행과 같음)

① -----
-- 따르고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금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고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4. (생 략)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표 2의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가구분할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7.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가정용 사용단계 1~20세제곱미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면

8.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정용 사용량 -----

6. -----

--- 사용량 -----

7. -----

----- 사
용량 -----

8. -----
----- 학교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2
의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
곱미터의 요금단가 적용

9. (생략)

② (생략)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생략)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
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생략)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는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다.

② (생략)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
음)

② -----
----- 판결이 ---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① ----

----- .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업종구분표(제30조제1항 관련)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가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기숙사(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 기숙사의 경우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장등록업체(제조업)를 제외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별표 4]

수압별 누수량 조건표(제15조제1호 관련)

수압(kg/cm ²)	0.2	0.4	0.6	0.8	1.0	1.2	1.4
누수량(m ³ /hr)	1.432*A	2.024*A	2.479*A	2.862*A	3.20*A	3.20*A	3.786*A
수압(kg/cm ²)	1.6	1.8	2.0	2.2	2.4	2.6	2.8
누수량(m ³ /hr)	4.048*A	4.293*A	4.525*A	4.746*A	4.957*A	5.160*A	5.355*A
수압(kg/cm ²)	3.0	3.2	3.4	3.6	3.8	4.0	4.2
누수량(m ³ /hr)	5.543*A	5.724*A	5.901*A	6.072*A	6.238*A	6.40*A	6.558*A
수압(kg/cm ²)	4.4	4.6	4.8	5.0	6.0	7.0	8.0
누수량(m ³ /hr)	6.712*A	6.863*A	7.011*A	7.155*A	7.838*A	8.466*A	9.051*A
수압(kg/cm ²)	9.0	10	11	12	13	14	-
누수량(m ³ /hr)	9.60*A	10.119*A	10.613*A	11.085*A	11.538*A	11.973*A	-

※ 산출근거 $Q=3.2 \times A \times \sqrt{P}$

(Q : 시간당 누수량(m³/hr), A : 누수부위 면적(cm²), P : 수압(kg/cm²))

예) 누수량 산출 1mm×5cm가 파열되고 수압이 3.6kg/cm²이라면

누수부위 면적 A = 0.1cm × 5cm = 0.5cm²

시간당 누수량 Q = 3.2 × 0.5cm² × 1.897kg/cm² = 3.036(m³/hr)

관 련 법 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

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하수도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나.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다.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9.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의 규정” 을 “제15조” 로,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를 “하수관로” 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2조” 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8조에 따른” 으로 한다.

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 을 “(하수관로 준설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의” 를 “하수관로의” 로, “하수관거상태” 를 “하수관로 상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 를 “하수관로” 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 을 “법 제27조제5항” 으로, “별표 1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4항에 따라” 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 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 중 “별표 2” 를 “별표 2 및 별표 2-2”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의2” 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로,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수관거” 를 “하수관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나목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를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로, “공공하수관거까지” 를 “하수관로까지” 로, “하수관거 설치에” 를 “하수관로 설치에” 로, “공공하수관거의” 를 “하수관로의”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제21조제1항 중 “별표 9의 서식에 따른 분뇨” 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뇨” 로 한다.

제23조의2 후단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신용카드 등의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물환경보전법」”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적용례) 제26조의 가산금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u>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u></p> <p>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u>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u></p> <p>2. (생략)</p> <p>3.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p> <p>4. 「지하수법」 제7조 및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p> <p>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u>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u> 매년 1회 이상 <u>하수관거</u></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u>제15조</u> ----- ----- <u>하수관로</u>----- ----- -----.</p> <p>제3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에 <u>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u></p> <p>2. (현행과 같음)</p> <p>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u>시행령</u>”이라 한다) 제22조----- --</p> <p>4. ----- <u>제8조에 따른</u> ----- -----</p> <p>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u>하수관로의</u> ----- ----- <u>하수관로 상태</u>-----</p>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하수관로-----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 별지 제1호서식-----

② ----- 제1항-----

----- 제4항에 따라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생 략)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 및 별표 2-2-----
-----.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생략)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생략)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생략)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따라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

-----.

1. (현행과 같음)

2. -----

----- 따라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생략)

3. (생략)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른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따라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하수관로 -----
-----.

② -----

-----.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생략)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1조(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 등을 수집·운반하여 분뇨처리장 반입시 별표 9의 서식에 따른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니 처리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담금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따른 -----

-----.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
----- 하
수관로까지 -----
--- 하수관로 설치에 -----
----- 하수관로의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분뇨처리장 반입량 확인) ① -----
-----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분뇨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

-----.

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증가산금 징수는 할 수 없다.

제25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후단 삭제>

<삭 제>

제2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100분의 2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제27조(신용카드 등의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별표 2-2]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0조제2항 관련)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단체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기숙사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된 사업장

- 주) 1. 상기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단일 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업종 구분 시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하되,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을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관 련 법 규

□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공고 제2022-1342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2조제3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65,
FAX: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2조제3항)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범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를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36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u>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25조(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② (생략)</p> <p>③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u></p> <p>제36조(기금운용계획) ① <u>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u></p>	<p>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새로</u> ----- -----.</p> <p>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u></p> <p><삭제></p>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제38조(관계 규정의 적용) 기금을 관리할 때 이 조례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공고 제2022-1348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52564, 주소: 사천시 환경길 55(사등동), 전화: 831-5602,
FAX: 831-6064)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 19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3명 1조 작업 예외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사 천 시 공 보

제800호

다.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u></p> <p><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u>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u>나.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u></p> <p><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3명 1조 작업 예외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 style="margin-left: 2em;"><u>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u></p>

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다.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